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사유 및 절차 - 퇴직자의 행사 후 사직 이유로 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2014008 판결



## 1. 사안의 쟁점 -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후 자진사임 이유로 취소 여부

회사의 주장요지 - 대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 사임하였고, 이는 상법 제542조의3 제5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가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함, 회사는 퇴직 후 이사회 결의로 개최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음

##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후 사임이유로 취소 인정

(1)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에게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삼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무 충실을 유도하고자 하는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기존주주의 불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상법은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제542조의3 제5항과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와 같이,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때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재량에 따라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서 퇴사한지 약 2년 8개월이 경

과하여,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 542조의3 제5항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및 피고의 정관 제11조의1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존재하였다. 회사 피고는 원고의 퇴사 등을 이유로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다.

(4) 스톡옵션 행사자(원고)의 취소 불가 주장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인

2년의 재임 기간을 충족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행사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서울고등법원 원고주장 배척 - 상법과 피고의 정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요건으로서 최소 2년의재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시기를 2년의 재임 기간 이내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서도 마찬가지로 취소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은 앞서 본 상법 및 피고 정관의 문언을 넘

어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부여

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였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취소 전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선제적으로 행사하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임직원에게 장기적으로 직무 충실 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2014008 판결

스톡옵션, 회사소송, 기술법무,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